



2026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재입학 추가 모집 계획

2026. 7.



(삼척교육지원과 학사팀)

2026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재입학 추가 모집 계획

1. 목 적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의원퇴학 또는 제적 등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학업을 마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고자 함

2. 근 거

-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 나. 강원대학교학칙 제56조(재입학)
- 다.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원양성기관 정원 운영 지침)

3. 재입학 대상 및 제외 대상

가. 재입학 대상

- 1) 의원퇴학(자퇴)한 자
- 2) 미등록, 미복학, 미수강, 학사경고 등으로 제적된 자
- 3) 징계 제적자 중 제적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자

※ 재입학 허가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재입학 허가는 자동 취소됨

나. 재입학 제외 대상

1) 재입학 후 제적된 자 ※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학칙 제56조)

2) 당초 소속 모집단위가 폐지되거나 학제가 변경되어 학칙 상 입학정원이 없는 학과가 된 경우 (단, 모집단위 명칭 단순 변경, 통합, 분리, 학제 변경된 학과의 경우 재입학 및 교육과정 이수 가능 여부를 학과 또는 전공으로 문의)

4. 재입학자 교과 이수 및 교육과정 적용 기준

가. 재입학 이전 학사경고 효력 무효

나. 재입학 이전 취득학점 모두 인정

다. 재입학한 학년도 교육과정 적용(다만, 학부·학과의 장은 재입학한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사정을 고려하여 처음 입학한 학년도로 정할 수 있다.)

5. 재입학 여석 산정 및 선발기준

가. 재입학 여석 산정(정원내·외 구분)

- 2025. 10. 1. ~ 2026. 3. 31. 기간 중 제적된 학생 수에서 2026학년도 일반편입생 수와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한 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정원내/정원외 구분선발)
- 일반학과: 산출한 총 여석 범위 내에서 정원내·외 구분 선발
- 의료인 양성학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선발
- 교원 양성학과: 모집단위의 입학정원 결원 발생 시 결원된 학년에만 선발

재입학 여석 산정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 제28조의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제1항 및 제3항
- 교원양성기관(사범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단, 정원내외 구분)
 - (정원내) 승인정원 결원 시 충원 가능, 단, 결원된 학년에만 충원 가능.
 - ex. 3학년 결원 발생 시 3학년으로만 충원 가능
 - (정원외) 정원외 승인 범위 안에서 충원 가능
 - 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12.11.30.)
 - 교원양성기관 정원 운영 지침(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18.11.5.)
 - 2026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나. 재입학 가능 여석

구분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정원내	정원외
일반학과 (교원 및 의료인양성학과 제외)	전체학과	297	15
의료인 양성학과	방사선학과	2	1
	안경광학과	11	-
	작업치료학과	7	-
	치위생학과	8	1
계		325	17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 없음.

다. 재입학 선발기준

-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학과와 그 당시 학년으로 선발
- 재입학 여석 보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발
 - 1) 재입학 허가 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
 - 2)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상위인 자
 - 3) 취득학점이 많은 자

6. 재입학 업무처리 절차

가. (학생) 재입학 원서 제출

-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다 갖추어 학과에 방문 제출

※ 『학부(과)장 의견서』 작성을 위해 학과사무실로 유선연락 후 방문

나. (학과 또는 전공) 재입학 원서 접수

- ※ 재입학 학생은 제적 전 당시의 학과 소속으로 복적 됨을 유의하여, 모집단위 개편(통폐합, 분리 등) 또는 명칭 변경된 학과에서는 재입학 가능 여부 및 교육과정 이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상담 및 재입학 원서 접수

다. (학과 또는 전공) 학과별 교수회의 의결

- 해당학과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대상자들의 재입학 승인 여부에 대하여 의결토록 함

※ 학과 및 전공에서는 승인여부 검토 시 우리대학 『인권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퇴학 이전 '성비위 사실' 등에 대해 확인하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라. (학과 또는 전공) 재입학 승인 결과 보고

- 해당학과는 **승인결과(가/부)**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교육지원과로 송부

마. (교육지원과) 재입학 허가

- 학과별 교수회의를 통해 재입학 승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총장이 재입학 허가

7. 제출서류

가. 재입학 원서 1부

나. 재입학 사유서 1부

다. 서약서 1부

라. 성적증명서 1부 (신입학 및 편입학 첫학기 수업일수 2/3 이전 제적자 미첨부)

마. 학적부 1부

바. 학부(과)장 의견서(별도 서식 없음) 1부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8. 재입학 지원자 유의사항

가. 퇴학 전 '성 비위 사실' 등 확인 시 재입학 승인을 불허할 수 있음

나. 군복무 중인 자는 학기 시작 4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하여야 함

다.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입학 허가는 취소됨**

라. 재입학생은 재입학한 첫 학기 휴학 불가(단, 질병 및 입대휴학은 가능)하며, 일반휴학 기간은 학칙 제61조(휴학)제4항에 따른 기간으로 제적 이전 휴학기간에 통산하여 처리함. 즉, 재입학 이전 최대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경우 재입학 후 휴학 불가

9. 재입학업무처리 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기본계획 수립	2026. 7. 20.(월)	
선발계획 공고 및 안내	2026. 7. 21.(화) 예정	전부서 공문시행 및 홈페이지 학사공지 안내
재입학 지원서 접수 및 서류심사	2026. 7. 21.(화) ~ 7. 31.(금)	지원자→학부(과) 및 전공사무실로 제출 →학(부)과별 서류심사
재입학 승인 결과 보고	~ 2026. 8. 4.(화)까지	학부(과) 및 전공→ 교육지원과로 승인 결과 '가/부' 보고(공문)
재입학 허가 통보	2026. 8. 7.(금) 예정	학사지원과→학부(과) 및 전공 공문 시행 및 재입학자 개별 통보
수강신청	2026. 8. 12.(수) ~ 8. 14.(금)	재입학 허가 승인 학년 해당기간에 직접 신청 (수강문의: 033-570-6425)
등록금 납부	2026. 8. 25.(화) ~ 8. 28.(금)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미납 시 재입학 허가 취소 (납부문의: 033-570-6242)

※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